

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1. 8. 31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1. 8. 31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90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2001. 9. 5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)

제안이유

○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암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와 국·도비 보조사업의 의료수가가 상이함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주요골자

○ 보험급여 갑면대상 겸사항목 중 국가암조기발견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동사업지침에 의한 수가를 적용함(안 제4조제2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?	○ 시민부담은 없고 국·도비 보조사업인 만큼 일반 병·의원과 보건소 수가를 맞춰 세수 증대를 올리기 위해 동 지침대로 적용코자 함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516호
의결년월일	제90회 (2001. 9. 8)

제출년월일 : 2001. 8. 31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암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와 국·도비 보조사업의 의료수가가 상이함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보험급여 감면대상 검사항목 중 국가암조기발견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동사업지침에 의한 수가를 적용함(약 제4조제2항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국가암조기발견사업의 경우에는 동 사업자침에 의한 수가를 적용한다.

부 차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